경기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공고 제2026 - 17호

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

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25일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

1. 합격자 명단

응시번호	성 명	응시번호	성 명
고양-101	강 O 아	고양-110	박 O 원
고양-102	고 O 진	고양-111	박 O 인
고양-103	김 O 희	고양-112	서 O 화
고양-104	김 O 기	고양-113	오 O 하
고양-105	김 O 희	고양-114	이 O 주
고양-106	김 O 연	고양-116	정 O 민
고양-107	김 O 린	고양-117	정 O 주
고양-108	문 O 윤	고양-118	정 O 연
고양-109	박 O 은	고양-119	홍 O 진

2.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

가. 제출 기간: 2026. 3. 25.(수) ~ 3. 26.(목) 18:00

나. 제출 서류:

- **정책제안서(필수 제출)** <별지서식 제1호>
- **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(필수 제출)** <별지서식 제2호>
- **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필수 제출)** <별지서식 제3호>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*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다. 제출처: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

라. 기타 안내 사항
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'정책제안서'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정책제안서 주제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지정한 주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

* 정책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

3. 면접 전형 계획

가. 면접일시: 2026. 3. 31.(화) 14:00 ~

나. 면접장소: 고양고용센터(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6) 3층

다. 면접대기: 고양고용센터 3층 면접자 대기실

대기일시: 2026. 3. 31.(화) 13:30 ~

○ **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**

※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면접 대상자는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**지정된 시간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**(별도 추가시험 없음)

○ **면접 불참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4. 최종 합격자 발표

가. 최종 합격자 발표일: 2026. 4. 2.(목)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홈페이지,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,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 공고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, 포기,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

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유의 사항

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○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○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합격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채용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(☎031-931-290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별지서식 제1호> (예시)

정책제안서

지원분야	고용	성 명		연락처		e-mail	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(예: 복지, 노동, 산업, 금융 등)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○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
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
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<별지서식 제2호>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**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**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**①에서 "예"에 답변한 경우**, **다른 법률에서**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**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"가족채용"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<별지서식 제3호>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: (서명)

경기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귀하